

갑”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약정 취소는 물론 제반 보상을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약정불이행) 을”이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때 갑”은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인증해제 관련 의무) 인증이 정지, 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 을”은 인증서 및 표시판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을”은 ‘대진인증마크’의 표시 및 홍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을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 을”은 인증심사 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한다.

- ① 불만의 조사 접수 및 처리방안 등의 기록을 포함한 문서와 기록의 조사
- ②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 및 위탁계약자와의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 불만처리 등) ① 을”은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은 불만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 시 그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불만사항 및 기타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기술)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받은 기준에 대한 변경) ① 갑”은 인증 제품(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된 요구사항의 시행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 제품(기술)에 대한 재심사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요구사항을 을”이 수용하는 경우 갑”은 필요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수용하고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재발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요구사항을 을”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갑”은 필요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수행하고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재발행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변경된 요구사항의 시행일부터 인증표시를 정지한다.

제12조(인증품목에 대한 변경) 을”은 제품(기술)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시방이나 생산프로세스 또는 품질시스템 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은 특별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을”이 인증 문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소재지 :
기관명 :
대표자 : (인)

“을”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인)